

재단법인 그린피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5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4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안진회계법인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4
포괄손익계산서 -----	5
자본변동표 -----	6
현금흐름표 -----	7
주석 -----	8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그린피스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그린피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그린피스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정희

2018년 3월 3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8년 3월 3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그린피스

제 5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4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그린피스 대표이사 쓰이팽청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6층

(전 화) 02-3144-1994

재무상태표

제 5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4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그린피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당) 기말		제 4(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589,046,501		1,102,693,536
현금및현금성자산	4,21	811,625,119		321,888,888	
단기금융상품	5,21	500,000,000		500,000,000	
기타금융자산및채권	6,21	239,223,484		233,377,750	
기타유동자산	7	38,197,898		47,426,898	
II. 비유동자산			193,566,410		173,489,009
유형자산	8	193,566,410		173,489,009	
자 산 총 계			1,782,612,911		1,276,182,545
부 채					
I. 유동부채			3,894,503,492		943,323,207
차입금	9,21	2,999,920,000		604,250,000	
미지급금	21	256,260,956		206,991,890	
미지급비용	21	587,609,835		86,561,266	
예수금		50,712,701		45,520,051	
II. 비유동부채			3,186,306,578		6,400,438,888
차입금	9,21	2,142,800,000		5,196,550,000	
미지급비용	21	529,409,710		823,093,238	
순확정급여부채	10	514,096,868		380,795,650	
부 채 총 계			7,080,810,070		7,343,762,095
자 본					
I. 자본금	11		500,000,000		500,000,000
II. 결손금	12		(5,798,197,159)		(6,567,579,550)
자 본 총 계			(5,298,197,159)		(6,067,579,550)
부 채 및 자본 총계			1,782,612,911		1,276,182,545

주석 참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5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4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그린피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당) 기		제 4(전) 기	
I. 영업수익			7,391,387,932		6,687,148,633
기부금수입	13	6,590,335,769		6,678,000,066	
기타수익	14	801,052,163		9,148,567	
II. 영업비용			6,601,014,997		7,047,837,506
영업비용	15	6,251,018,967		6,530,337,754	
기타비용	16	349,996,030		517,499,752	
III. 당기순이익(손실)			790,372,935		(360,688,873)
IV. 기타포괄손익			(20,990,544)		(73,361,131)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0	(20,990,544)		(73,361,131)	
V. 총포괄손익			769,382,391		(434,050,004)

주석 참조

자 본 변 동 표

제5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4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그린피스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 계
2016.1.1(전기초)	500,000,000	(6,133,529,546)	(5,633,529,54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3,361,131)	(73,361,131)
당기손실	-	(360,688,873)	(360,688,873)
2016.12.31(전기말)	500,000,000	(6,567,579,550)	(6,067,579,550)
2017.1.1(당기초)	500,000,000	(6,567,579,550)	(6,067,579,55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0,990,544)	(20,990,544)
당기순이익	-	790,372,935	790,372,935
2017.12.31(당기말)	500,000,000	(5,798,197,159)	(5,298,197,159)

주석 참조

현금흐름표

제5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4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그린피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5(당) 기		제 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0,642,820		320,085,98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9	604,746,155		311,290,780	
2. 이자의 수취		5,896,665		8,795,20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0,906,589)		(36,960,079)
유형자산의 처분		5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21,406,589)		(36,960,079)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 +II+III)			489,736,231		283,125,90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1,888,888		38,762,984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11,625,119		321,888,888

주석 참조

주석

제 5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4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그린피스

1. 일반사항

재단법인 그린피스(이하 "재단")는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6층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요소 제거 및 야생 동물 보호를 촉진, 장려하고, 추가 설립, 조달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사의 자본금은 그린피스 동아시아(홍콩)으로부터 수령한 500 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동 개정사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공시사항 이외에는 동 개정사항이 재단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단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재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개정사항을 당기에 최초 적용하였으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타 개정사항은 조기도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석 2.(1) 2) 참고)

개정사항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는 요약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동 지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공시규정의 유일한 예외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재단이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T OCI), 당기손익-공정가치(FVTPL)로 측정하도록 분류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여야 합니다('상각후원가'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선택권에 따라 공정가치-당기손익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로부터의 주요 변동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의 표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신용위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회계불일치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다면 당기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을 반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접근법에서는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손상사건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기업은 항상 기대신용손실과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기대신용손실금액은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 유형(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요구되었던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재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 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회계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확대된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단은 체결하고 있는 운용리스계약은 없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이러한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이나 향후 리스료지급액에 대한 부채의 인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운용리스계약에 대해서 특정한 주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예비적인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리스계약들은 동 기준서 하에서 리스의 정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재단이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 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할 것입니다. 사용권자산 및 관련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동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재단은 동 기준서의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재단은 1) 재단이 리스이용자인 금융리스 및 2) 재단이 리스제공자인 경우(운용리스 및 금융리스)는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거나(사후판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동 해석서를 소급적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적 적용에는 특정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단은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단은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수익인식

재단은 이행 의무가 없는 기부금의 경우 현금 수취시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된 이후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재단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재단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
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4)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재단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재단이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재단은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재단은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축물	5년
비품	3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재단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7)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재단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재단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요구불예금	300,896	303,052
외화예금	510,729	18,836
합 계	811,625	321,888

5.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간	이율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KEB하나은행	1.50%	500,000	500,000

6. 기타금융자산및채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및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213,830	223,880
미수수익	25,393	9,498
합 계	239,223	233,378

7. 기타유동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금	37,617	-
선급비용	581	47,427
합 계	38,198	47,427

8.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구축물	비품	합계
취득원가	172,419	313,069	485,488
감가상각누계액	(66,220)	(225,702)	(291,922)
장부금액	106,199	87,367	193,566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구축물	비품	합계
취득원가	104,802	267,624	372,426
감가상각누계액	(36,094)	(162,843)	(198,937)
장부금액	68,708	104,781	173,489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금액
구축물	68,708	67,617	-	(30,126)	106,199
비품	104,781	53,790	(928)	(70,276)	87,367
합 계	173,489	121,407	(928)	(100,402)	193,566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금액
구축물	89,099	-	-	(20,391)	68,708
비품	149,714	36,960	-	(81,893)	104,781
합 계	238,813	36,960	-	(102,284)	173,489

9. 차입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장기차입금	2,999,920	2,142,800	604,250	5,196,550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유동	비유동
외화장기차입금	GPEA office	4.6%	2,999,920	2,142,80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유동	비유동
외화장기차입금	GPEA office	4.6%	604,250	5,196,550

(3) 당기말 현재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금액
2018.01.01 ~ 2018.12.31	2,999,920
2019.01.01 이후	2,142,800
합 계	5,142,720

10. 퇴직급여제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14,097	380,79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합 계	514,097	380,796

(2) 당기 및 전기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합계
기초	380,796	-	380,796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당기근무원가	236,812	-	236,812
이자비용(이자수익)	8,639	-	8,639
소 계	245,451	-	245,45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50,140	-	50,140
경험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	(29,149)	-	(29,149)
소 계	20,991	-	20,991
기여금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133,141)	-	(133,141)
기말	514,097	-	514,097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합계
기초	207,003	-	207,003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당기근무원가	158,682	-	158,682
이자비용(이자수익)	3,728	-	3,728
소 계	162,410	-	162,410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7,542	-	7,542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2,564)	-	(2,564)
경험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	68,383	-	68,383
소 계	73,361	-	73,361
기여금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61,978)	-	(61,978)
기말	380,796	-	380,796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3.16	2.43
기대임금상승률	5.14	5.08

(4) 보고기간 말 현재 다른 모든 가정이 유지될 때, 유의적인 보험수리적가정이 발생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1%증가시	35,047	27,096
	1%감소시	(40,806)	(31,705)
기대임금상승률	1%증가시	(40,920)	(31,549)
	1%감소시	35,772	27,474

11. 자본금

자본금은 500,000,000원으로 설립 이후 변동은 없습니다.

12. 결손금

당기 및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6,567,579)	(6,133,529)
당기순이익(손실)	790,373	(360,68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991)	(73,361)
기말금액	(5,798,197)	(6,567,579)

13. 기부금수익

당기 및 전기 중 기부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부금품 모집 수익	5,114,778	4,239,976
GPEA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1,475,558	2,438,024
합 계	6,590,336	6,678,000

14. 기타수익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7,431	7,618
외화환산이익	786,821	1,531
잡이익	6,800	-
합 계	801,052	9,149

15. 영업비용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3,279,305	3,026,495
복리후생비	100,950	137,558
외주용역비	527,656	879,636
지급수수료	277,765	397,901
교통비	218,263	279,921
통신비	59,602	41,708
정보이용료	25,498	26,508
캠페인장비료	110,503	130,544
사진촬영비	25,367	19,549
우편전달비	60,656	64,822
인쇄비	112,492	175,809
데이터관리비	1,375	3,868
광고비	896,586	693,332
세금과공과	20,298	179,248
은행 및 신용카드수수료	86,060	64,574
기타	448,643	408,865
합 계	6,251,019	6,530,338

16. 기타비용

당기 및 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312,916	315,563
외화환산손실	25,920	201,471
외환차손	10,733	466
유형자산처분손실	427	-
합 계	349,996	517,500

17. 법인세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8.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재단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36,000천원(전기말 225,000천원)에 대한 이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19. 현금흐름표

당기와 전기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손실)	790,373	(360,689)
조정		
감가상각비	100,402	102,284
유형자산처분손실	427	-
퇴직급여	245,452	162,410
이자비용	312,916	315,563
외화환산손실	-	201,471
외화환산이익	(680,380)	-
이자수익	(7,431)	(7,618)
자산및부채의 변동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312)	1,048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9,229	234,162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9,269	(313,19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83,251)	30,709
예수금의 증가	5,193	7,118
퇴직급여 지급액	(133,141)	(61,978)
합 계	604,746	311,290

20. 특수관계자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기타의 특수관계자	GPEA HK office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부금수익		영업비용	
	당기	전기	당기	전기
GPEA HK office	1,475,558	2,438,024	312,916	315,563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채권		채무	
	당기	전기	당기	전기
GPEA HK office	37,231	-	6,149,988	6,623,893

21. 금융상품

(1)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재단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단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11,625	321,889
단기금융상품	500,000	500,000
기타금융자산및채권	239,223	233,378
합 계	1,550,848	1,055,267

(2)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재단의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재단은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단의 비파생 금융부채의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	5,142,720	5,800,800
미지급금	256,261	206,992
미지급비용	1,117,020	909,655
합 계	6,516,001	6,917,447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부채	3,843,791	811,242

(3) 이자율위험관리

재단은 고정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공정가치 위험관리

재단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단기간의 금융상품으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금액이 유사하여 공정가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